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405286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석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변론 종결2020. 2. 6.

판결 선고2020. 4.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116,82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의서 작성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피고 B, D은 성남시 분당구 E 지상 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위 7개 호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 소유관계 및 관련 채무관계 등에 관하여, 2009. 6. 22. 별지와 같이 원고, 피고 B이 각 30%, D이 40%의 지분을 가지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는 지분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9. 6. 29. 공증인 M법무법인 2009년 제2062호로 공증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가처분 및 원고의 N에 대한 송금

1)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G, H, I, K호실에 대하여 2010.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합900호로 이 사건 협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0. 1. 19. 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처분등기는 2010. 4. 8.에 2010. 4. 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피고들은 부부관계이고, N은 피고들의 아들인데, 원고는 2010. 4. 30. N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의 가처분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송금

1)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636호로 이 사건 협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처분등기는 2011. 5. 18.에 2011. 5. 1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한편 위 가처분 등기 말소일과 같은 날인 2011. 5. 18.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5.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1. 7. 22. 피고 C에게 5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7. 22.에 2011. 7. 21.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피고들은 2011. 7. 21. 무렵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DOCUMENT: 이 사건 영수증(이미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돈의 합계 1,116,827,600원(= 830,000,000원 + 114,033,695원 + 33,000,000원 + 109,922,587원 + 29,871,395원, 100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협의서 제4항 관련 청구 위 제4항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30%를 소유하는 대신 피고 B의 D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기초사실 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등기를 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몰린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 B의 요구대로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8억 3,000만 원을 부당이득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협의서 제5항 관련 청구 위 제5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P은행에 대한 약 30억 원 대출금과 개인 대출금 약 8억 원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지분대로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38억 원에 대하여 피고 B은 30%의 지분대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P은행 대출금 30억 원에 관한 부분

원고는 2009. 6. 25.자 P은행 대출금 30억 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1. 7. 22.까지 이자 380,112,31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그중 30%에 해당하는 114,033,695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나) 개인 대출금 8억 원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Q로부터 2009. 6. 25.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8. 3. 원금 1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변제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에 대한 30%인 3,300만 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2) 원고는 R으로부터 2009. 6. 25.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0. 5. 4. 원금 3억 원과 이자

66,408,62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에 대한 30%인 109,922,587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3) 원고는 S의 물상담보로 T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1. 7. 22.까지 이자 99,571,31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에 대한 30%인 29,871,395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협의서 제4항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N은 2008. 4. 2. 이 사건 부동산 중 I호를 U,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V'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오다가 2009. 5. 22. 폐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갖게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0% 상당의 지분을 원고와 D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이 사건 협의서 제4항에 따른 7억 5,000만 원에 N에 대한 I호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인정하여 더한 8억 3,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위 8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협의서에 따른 피고 B의 30%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기 위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8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협의서 제5항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협의서 제5항은 피고 B이 위 협의서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0% 지분을 갖는 것을 전제로 대출금 채무를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정한 것인데, 앞서 본대로 원고는 피고 B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대금 수령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이 사건 영수증을 수령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지분 매매와 동시에 위 제5항에 기한 채무도 면제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부분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원고, 피고 B, D은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B이 지분 매도 후 조합을 탈퇴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청산 대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조합임을 전제로 '피고 B의 탈퇴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게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제1항),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목적이 없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협의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관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공동사업의 경영'과 그에 따른 '이익 분배'를 정하고 있지 않는 데다, 제8, 9항에서는 추후 지분 비율대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관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법상 조합으로는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도 제2항과 같이 1,116,827,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C은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행위 내지 이에 관련된 채무 부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2020. 2. 5.자 원고 준비서면 1쪽,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20. 2. 5. 위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하였고, 또한 이 사건 청구권원은 위 피고가 피고 B 소유 재산의 명의수탁자이므로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기선

판사신정민

판사김주식

별지